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CHINA NEWSLETTER

May, 2026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 칼럼 ▐

01. 중국에서 해외로 투자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ODI 절차: 중국 해외직접투자 인허가의 이해
02.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 및 침해 구제 가이드 (제 2 편)계약서 작성 및 개량기술 귀속의 설계

▌외부 기고 ▐

01. 중국 상표법상 거절 사유에 대한 고찰 (법률신문 2026. 5. 6)
02.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노동계약 체결 실무 (월간노동법률 2026. 5. 7)

▌최신 법령/판례 ▐

01. 「미국이 중국 기업 5 개사에 대해 이란산 석유 관련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한 차단명령 공포」(公布关于美国对 5 家中国企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的阻断禁令)
02. 「EU 외국보조금 조사 관련 조치가 부당한 역외관할에 해당함에 관한 공고」(关于欧盟外国补贴调查相关做法构成不当域外管辖的公告)
03.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 (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纠纷案件适用惩罚性赔偿的解释)

▌법률 칼럼 ▐

01. 중국에서 해외로 투자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ODI 절차: 중국 해외 직접투자 인허가의 이해

— 한국 기업 대상 크로스보더 M&A 및 중국 내 한국계 법인의 해외투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NDRC·상무부·외환 절차 —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중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중국 기업에 매각되는 크로스보더 거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때 한국 기업 또는 매도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인허가 절차, 즉 ODI(Outbound Direct Investment) 절차다.

ODI 는 중국 기업 또는 중국 내 투자주체가 해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그 대금을 중국 밖으로 송금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거쳐야 하는 승인·신고 및 외환등기 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는 순수 중국 로컬기업의 해외 M&A 뿐만 아니라, 중국에 설립된 한국계 중국법인이 한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역외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 자회사·SPV 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즉, ODI 절차는 중국 매수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할 때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중국법인을 통해 외부 투자, 해외 자회사 설립, 해외 지분 취득, 해외 M&A 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중국 내 인허가 절차다. ODI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투자대금 또는 인수대금의 해외 송금이 차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거래 종결 또는 투자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각국의 기술 안보 규제가 인수 대상 국가가 자국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방어막"이라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인허가는 투자 주체가 중국 밖으로 자본을 내보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출국 심사"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 기업이 거래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국 내 법인을 통해 해외투자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거래 초기 단계부터 ODI 절차의 적용 여부, 승인·신고 구분, 관할 기관, 예상 소요 기간 및 계약상 안전장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중국 해외직접투자 인허가 제도의 핵심 구조와 딜 스케줄에 대한 실무상 쟁점을 살펴본다.

1. ODI 첫 관문: 민감류 프로젝트(敏感类项目) 해당 여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인허가 제도는 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이하 "발개위")의 「기업해외투자관리방법」(国家发展改革委令 제 11 호, 2018 년 3 월 1 일 시행, 이하 "발개위 11 호령"), ② 상무부(MOFCOM)의 「해외투자관리방법」(商务部令 2014 년 제 3 호, 이하 "상무부 3 호령"), 그리고 ③ 국가외환관리국(SAFE) 관련 규정(汇发[2015]13 号 등)을 3 대 근거 법령으로 한다.

중국 ODI 제도의 출발점은 해당 투자가 '민감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판단에 따라 사전 '승인'(核准, 이하 동일)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간이한 '신고'(备案, 이하 동일) 절차를 밟을지가 결정된다. 이 구분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딜 타임라인과 거래 종결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가. 발개위 기준 — 발개위 11 호령 및「해외투자 민감업종 목록(2018 년판)」

발개위 11 호령 제 17 조 및 이에 근거하여 2018 년 2 월 발표된「해외투자민감업종 목록(2018 년판)」(发改外资〔2018〕251 号, 이하 '발개위 민감목록')에 따르면, 민감류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발개위 기준 민감류 프로젝트

① 민감 국가·지역 투자

▸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지역

▸ 전쟁 또는 내란이 발생한 국가·지역

▸ 중국이 체결·가입한 국제조약 등에 따라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국가·지역

② 민감 업종 투자 (발개위 민감목록 기준)

▸ 무기 장비의 연구·생산·유지보수 | ▸ 국경 횡단 수자원 개발·이용 | ▸ 뉴스 미디어

▸ 국무원 판공청 통지(国办发〔2017〕74 号)에 따라 제한되는 업종: 부동산, 호텔, 영화관(影城), 오락업, 스포츠클럽, 구체적인 실업(实业) 프로젝트를 수반하지 않는 해외 주식투자펀드 또는 투자플랫폼

특히 발개위 11 호령 제 2 조는 적용범위를 '투자주체가 직접 또는 그가 지배(控制)하는 해외 기업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모회사가 해외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에서도, 해당 SPV 가 중국 모회사의 지배 하에 있다면 발개위 승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 거래 구조가 복잡할수록 이 "지배 관계"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발개위가 2018 년에 발표한 FAQ(常见问题解答)에 따르면, 민감 업종 중 '부동산', '호텔', '해외 주식투자펀드 또는 투자플랫폼'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중국 내 자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권익 투입이나 융자·보증 제공 없이 전액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투자는 발개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 나머지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나. 상무부 기준 — 상무부 3 호령

상무부 3 호령 제 6 조 및 제 7 조에 따른 민감류 프로젝트의 기준은 발개위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다.

구분	발개위 11 호령 (민감 국가)	상무부 3 호령 (민감 국가)
민감 국가	미수교국, 전쟁·내란 발생국, 조약상 제한 국가 등 (포괄적)	미수교국, 유엔 제재 대상국 (열거적, 보다 좁음)
민감 업종	발개위 민감목록 4 개 유형 (상세 열거)	중국의 수출 제한 품목·기술 관련 업종, 한 국가 이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판단 기준 성격	목록 기반(List-based): 명시된 업종=승인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개별 판단 필요

실무상 주의: 상무부 민감 업종의 불명확성

상무부 3 호령상 "영향이 둘 이상의 국가의 이익에 미치는 업종"이라는 요건은 그 해석 범위가 광범위하다. 예컨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 M&A 의 경우, 상무부가 이를 "민감 업종"으로 분류하여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상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무부와의 사전 소통(Pre-Filing Communication)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2. ODI 관리의 세 기둥: 발개위·상무부·외환 절차

발개위 11 호령 제 33 조는 "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외환관리·해관 등 관계 기관은 관련 절차를 처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도 관련 자금결제·융자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즉,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실제 자금 집행이 법적으로 봉쇄된다. 크로스보더 M&A 거래에서 이 세 단계를 매도인 측이 선행조건(CP)으로 정확히 통제하지 못하면 거래 무산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

가. 발개위 절차 — 근거: 발개위 11 호령

(1) 승인 대상: 민감류 프로젝트

민감류 프로젝트는 국가 발개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프로젝트 신청보고서(项目申请报告)"의 핵심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발개위 11 호령 제 19 조).

- 투자주체 현황 (최종 실제 지배자(最终实际控制人)까지 소급하는 지분구조도 포함)
- 프로젝트 명칭, 투자 목적지, 주요 내용 및 규모, 중국 측 투자액
-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의 국가 이익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투자주체의 진실성 선언서

발개위는 수리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동 제 23 조), 사안이 복잡하거나 관계 부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 영업일 연장이 허용된다. 실무상 승인 사안의 경우 3~6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2) 신고 대상: 비민감 프로젝트 — 관할 기관과 금액 기준

비민감 프로젝트라도 투자 주체의 성격과 투자 규모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진다. 이 구분을 잘못 판단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기관에 신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한다.

투자 주체	중국 측 투자액	관할 기관
중앙관리기업 (央企)	금액 불문	국가 발개위에 직접 신고
지방 기업	3 억 달러 이상	국가 발개위에 직접 신고
지방 기업	3 억 달러 미만	성(省)급 발개위에 신고

중국 측 투자액이란 투자주체가 직접 및 그가 지배하는 해외 기업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화폐·유가증권·실물·기술·지식재산권·지분·채권 등 일체의 자산·권익 및 융자·보증 제공 총액을 의미한다(발개위 11 호령 제 2 조 참조). 한국 기업 인수 대금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거래 규모가 3 억 달러 이상인 경우 국가 발개위 관할로 올라가게 된다.

(3) 발개위 신고 심사의 실질적 기준

법령상 신고는 서류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무상 발개위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기준을 적용하여 보완 요청 또는 지연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재무 건전성: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순자산이 음수(負)인 기업은 사실상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발개위는 해외 투자의 재무적 합리성을 논증할 것을 요구한다.

▪ 자금 출처의 진실성: 투자 자금이 기업의 적법한 영업 이익 또는 정당한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개인 자금 대납은 절대 금지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은행 또는 외환관리국에 의해 거절·처벌된다.

▪ 투자주체 설립 기간: 설립 1 년 미만인 기업은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자의 최신 감사 재무제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투자 구조의 합리성: 지배 구조(최종 실제 지배자까지 소급)가 명확하고, 투자 목적이 사업적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다층 구조는 추가 설명을 요구받는다.

▪ 신용 이력: 투자주체 및 그 지배주주가 경영이상명단(经营异常名录), 실신피집행인명단(失信被执行人名单) 등 불량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심사 불통과 또는 장기 지연의 원인이 된다.

(4) 발개위 승인·신고 통지서의 유효기간 및 변경 절차

발개위 11 호령 제 35 조에 따라 승인 문서 및 신고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2 년이다. 유효기간 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실효되며, 재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제 34 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투자주체의 증가 또는 감소
- 투자 지점의 중대한 변경
- 주요 내용 및 규모의 중대한 변경
- 중국 측 투자액 변화 폭이 원래 승인·신고 금액의 20% 이상이거나 1 억 달러 이상인 경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M&A 거래에서 가격 조정 메커니즘(예: Earn-out, 조정 후 가격)이 작동하여 최종 거래 가격이 당초 신청 금액과 20% 이상 차이 나게 되는 경우, ODI 변경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SPA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나. 상무부 절차 — 근거: 상무부 3 호령

상무부는 해외 투자의 적법성과 대외 경제 협력 측면을 심사한다. 발개위 절차와 병행 진행이 원칙이나, 실무상 발개위 승인 대상 사안의 경우 발개위 결정을 먼저 받은 후 상무부를 진행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

(1)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일반 신고 사안의 경우, 투자주체는 "해외투자신고표(境外投资备案表)"를 작성하여 영업허가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며,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 주관 부처는 즉시 「기업해외투자증서(企业境外投资证书)」를 발급한다(상무부 3 호령 제 9 조). 실무상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외투자신고표(가장 최근 지분 구조, 투자 대상국, 투자 금액 등 기재)
- 투자주체 영업허가증(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 설립 증서) 사본
- 투자결정 문서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권이 지배주주에게 있는 경우 지배주주 결정 문서)
- 투자 상대방 및 대상 기업 관련 기본 정보 서류
-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SPA 의 경우 LOI 단계 또는 SPA 초안)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자금 출처 진실성 증명 서류

특히 상무부 실무에서 주목할 점은, SPA 가 체결된 이후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상무부 심사관이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투자의 진실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SPA 에 기재된 거래 구조와 신고 신청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보완 요청이나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된다.

(2) 승인 절차: 민감 국가·업종

민감 국가·지역 또는 민감 업종에 대한 투자는 상무부 승인을 요한다(상무부 3 호령 제 6 조). 승인 절차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7 영업일 내 회신, 미회신 시 동의 간주),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인해 신고보다 현저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3) 기업해외투자증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 년 내 해외 투자를 개시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된다. 원래 증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원 발급 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미 신고된 거래에서 두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분 비율이 큰 측이 서면 동의를 받아 주신청인으로서 신고 또는 승인을 처리한다(상무부 3 호령 제 14 조 참조).

다. 국가외환관리국(SAFE) — 외환등기 및 송금

(1) 외환등기 절차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발개위 및 상무부 절차를 완료한 후, 투자주체는 관할 은행(외환업무 취급 은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외환등기(境外直接投资外汇登记)를 진행한다. SAFE 汇发[2015]13 호에 따라 2015 년 6 월 1 일부터 외환등기 관련 사무는 은행이 직접 처리하고, SAFE 는 은행을 통한 간접 감독 방식을 취한다.

실무상 외환등기 완료 후 일정 기간(통상 약 6 개월) 이내에 자금 송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기간 내 자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외환당국으로부터 업무 제한 조치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ODI 신고/승인 취득부터 클로징까지의 타임라인을 약 6 개월 내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은행 단계의 실질 심사 추세

최근 은행 실무상 거래의 진실성, 자금 출처, 투자 구조 및 최종 실수익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실수익자(UBO) 확인: 자연인 단계까지의 지분 구조 소명
- 자금 출처 확인: 기업의 영업이익, 금융기관 차입 등 합법적인 자금 출처 여부 확인. 개인 자금 대납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금이 통상 3~6 개월 정도 계좌에 예치(Seasoning)되어 있는 것이 권장된다.
- 기술 관련 사항 확인: 투자에 기술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중국의 수출 제한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SG 관련 사항: 투자 대상국(특히 EU 등)의 탄소 배출·노동권 관련 ESG 요건이 점차 거래 검토 과정에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3) 전기비용(前期费用) 조기 송금 제도

발개위 및 상무부 신고/승인 완료 전에도, 300 만 달러 및 중국 측 투자총액의 15% 한도 내에서 전기비용(前期费用, 실사 비용, 중개 보수, 예치금 등)을 조기에 송금할 수 있다(SAFE 관련 규정). 조기 송금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잔금을 환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12 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실무에서 활용하면 신고/승인 완료 전에도 일정 금액의 예치금(Deposit)을 매도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 거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매도인 측에서도 구속력 있는 선행조건(CP) 확인 전에 일정 수준의 자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3. ODI 절차 미이행 또는 위반의 법적 결과

ODI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 투자를 진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국 법령은 다양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해야 매수인의 ODI 미완료 리스크를 계약서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가. 민사·행정적 제재

- 발개위 승인·신고 미취득 시: 외환관리·해관 등 관계 기관은 관련 절차를 처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도 자금결제·융자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발개위 11 호령 제 33 조). 사실상 자금 집행이 법적으로 봉쇄된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허위 자료로 신고 취득 시: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 주관 부처는 해당 신고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처벌 결정을 공표한다(상무부 3 호령 제 28 조). 해당 기업은 3 년간 관련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다(동 제 32 조).

▪ 허위 자료로 승인 취득 시: 상무부는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해당 기업은 1 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동 제 29 조).

▪ 외환관리 위반 시: 「외환관리조례」 제 39 조는 도피외환(逃汇) 행위에 대한 외환 회수 명령, 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 추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연합징계(联合惩戒) 메커니즘

중국은 2018 년부터 "대외투자신고(승인)보고 잠정방법(商合发〔2018〕24 号)"에 따라 상무부·인민은행·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은행감독위원회·증권감독위원회·보험감독위원회·외환관리국 등 7 개 기관이 공동으로 위반 기업에 대한 연합징계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 기업은 ODI 위법위규 기록에 등재되어 이후 해외 투자, 국내 금융 지원, 정부 조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다. 사후 자금 회수 불가 리스크

ODI 신고/승인 없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이익 배당금이나 주식 양도 대금을 중국 내로 회수할 때 은행 단계에서 처리가 차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후 자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ODI 절차의 정상적 이행이 중요하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4. 실무상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국 ODI 라는 변수가 포함된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성공적인 종결에 이르기 위해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투명한 타임라인 관리

발개위 11 호령과 상무부 3 호령은 법정 처리 기간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보완 서류 요청과 추가 설명 요구가 반복되면서 전체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법정 기한만을 기준으로 딜 스케줄을 설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위험하다. 발개위 승인 대상 사안의 경우 충분한 버퍼를 두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② 투자 주체 및 자금 조달 구조의 사전 확인

발개위와 SAFE 는 투자 주체의 재무 상태와 자금 출처를 면밀히 심사한다. 특히 최근 설립된 SPV 가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진행할 경우, 형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나 서류 보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 초기 단계부터 투자 주체의 법적 지위, 지분 구조(발개위 11 호령상 '최종 실제 지배자(最终实际控制人)' 소명 포함), 자금 출처, 인수금융 구조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③ M&A 계약서상 안전장치 설계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인 중국 기업이 ODI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계약상 보호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시 '중국 내 ODI 관련 모든 정부 인허가 절차 완료'를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 명시하고, 해당 선행조건 불충족 시의 해제권(Termination Right)과 Break-up Fee(거래 무산 위약금)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ODI 절차 진행의 기한(Long Stop Date) 설정 및 기한 도과 시 처리 방안도 명확히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규정해 두어야 한다.

④ 당국과의 사전 소통 전략

민감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 또는 승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중국 변호사, 컨설턴트)를 통해 발개위·상무부와 사전 소통(Pre-Filing Communication)을 진행하여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⑤ 필요 서류의 선제적 준비

ODI 신청 시 매수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매도인) 측에서도 제공해야 할 서류가 상당수 요구될 수 있다. 법령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국이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진실성 증빙 자료'(투자 목적, 대상 기업 정보, 거래 구조 관련 서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의하여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두는 것이 거래 속도를 높이는 핵심이다.

5. 결어

중국 ODI 규제는 발개위 11 호령과 상무부 3 호령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된 복층적 인허가 체계로, 각 기관의 적용 기준과 절차가 미묘하게 다르며 실무상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 지연 또는 무산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자본과의 크로스보더 거래에 임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ODI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초기부터 ① 민감류 프로젝트 해당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여부, ② 적용 절차(신고 vs. 승인) 및 관할 기관, ③ 예상 소요 기간, ④ 계약서상 안전장치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거래의 성공적인 종결을 담보하는 선결 조건이다.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 **[ODI 관련 업무 사례]**

- 한국 자연인이 중국 내 설립한 회사를 대리하여 역외투자(返程投资) 구조로 한국 반도체 환경설비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프로젝트 수행
- 중국 모 기업을 대리하여 그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투자통화 변경 프로젝트 수행

중국 모 기업을 대리하여 그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 프로젝트 수행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02.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 및 침해 구제 가이드 (제 2 편)
계약서 작성 및 개량기술 귀속의 설계

들어가며

제 1 편에서 라이선스 유형 선택과 대상 권리의 사전 정비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 2 편에서는 **실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필수 조항**과, 한국 본사-중국 라이선시 간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개량기술 귀속 조항의 유효성 경계선**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1.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라이선스 유형**: 독점·배타·통상 여부를 명시적으로 특정.
- **라이선스 범위(지역·지정상품)**: 지역적 범위(특정 성·시, 중국 전역, 또는 전 세계)와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단, 등록된 권리의 권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라이선스 범위(실시 용도)**: 제조·생산·판매·수출·온라인 유통·OEM 여부 등 실시 용도는 사업 모델에 따라 매우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예컨대 "중국 내 제조만 허용하고 수출은 불가", "오프라인 직영매장에서의 판매만 허용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별도 협의", "OEM 생산은 허용하되 자체 브랜드 출시는 불가" 등 사업 필요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입니다. 문구가 모호할 경우 해석상 분쟁이 빈발하므로, 변호사 조언을 통해 문장을 구체화해 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기간**: 등록된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설정. 실무상 상표 라이선스는 3~5 년 단위, 특허·기술 라이선스는 5~10 년 단위로 설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자동갱신 조항을 두는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갱신 조항을 둘 때에는 ① 갱신 거절 통지 기한(예: 만료 6 개월 전), ② 갱신 시 로열티 조정 메커니즘(예: 시장가 재평가), ③ 최대 갱신 횟수·상한 기간을 함께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이 영구히 고착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 **품질 관리 조항(상표 라이선스의 경우)**: 상표를 라이선싱하는 경우, 중국 상표법 제 43 조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라이선시의 상품·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 의무가, 라이선시에게는 품질 보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표가 표창하는 출처 신뢰도와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감독 주기·감독 방법·품질 기준·시정 요구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책임 및 분쟁 해결**: 손해배상 범위와 중재·소송 관할 합의.

2. CNIPA 라이선스 등록(备案) — 특히 라이선시에게 중요한 쟁점

CNIPA 의 「상표 라이선스 등록 절차 가이드(关于商标使用许可备案程序的指引)」는 라이선스 등록 여부가 계약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으나, **등록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의 계약상 권리 자체는 유효하지만, 제 3 자와의 관계에서 라이선시의 지위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쟁점은 **라이선서보다 라이선시에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라이선서는 어차피 권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라이선시는 라이선스라는 계약적 지위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 예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예시 ① (이중 라이선스 분쟁)**: 한국 A 사가 중국 B 사에게 특정 지역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였으나 CNIPA 备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사가 동일 지역에 대하여 C 사에게 다시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C 사가 备案을 마쳤다면, B 사는 선의의 C 사에게 "내가 먼저 받은 라이선스"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B 사는 현지 설비 투자와 유통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반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예시 ② (침해자에 대한 대응 제약)**: 독점 라이선시가 제 3 자의 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단독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备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적격이나 손해 산정 단계에서 라이선스의 존부를 문제 삼아 신속한 구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과 같이 시간이 관건인 절차에서는 치명적입니다.
- **예시 ③ (라이선서 도산·지분 변동 상황)**: 라이선서가 도산하거나 지분이 양도되어 신규 권리자가 등장한 경우, 备案된 라이선스는 신규 권리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나, 미등록 라이선스는 신규 권리자로부터 효력을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备案 절차가 개시·완료되도록 계약서상 의무 조항(라이선서의 备案 협조 의무, 备案 완료 기한, 미이행 시 라이선시의 계약 해제권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기타 주요 검토 항목

검토 항목	법적 쟁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
로열티 원천징수세	국외 로열티 송금 시 통상 1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한·중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감면 및 증빙요건(거주자증명서 발급 등)의 적용 가능성을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검토 항목	법적 쟁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
	송금 이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처리	계약 종료 시 기술 자료·상표 사용 물품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와 그 확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합작법인(JV) 해산 시 기술 자료 회수 분쟁이 빈발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 업종 규제 확인	의약품, 담배, 식품, 화장품 등 특수 업종의 경우, 라이선시가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부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개량기술의 귀속 — 가장 치열한 협상 지점

개량기술(improvement)의 귀속 조항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첨예하게 협상되는 지점입니다. 한국 라이선서(본사) 입장에서는 "라이선시가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개량한 성과는 모두 본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무상 grant-back 조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국법상 이러한 조항은 유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①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천

과거 「기술수출입관리조례(技术进出口管理条例)」 제 27 조는 "개량된 기술 성과는 개량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삭제되어, 이제는 당사자의 계약 자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치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든 합의하면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현행 **중국 민법전 제 875 조**는 "당사자는 **상호 이익의 원칙(互利原则)에 따라** 특허 실시 및 기술비밀 사용의 후속 개량 기술 성과 분배 방법을 계약에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량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민법전 제 850 조** 및 「기술계약 분쟁 사법해석」 제 10 조는 "기술 발전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독점하는 조항"을 무효로 간주하며, 대표적 무효 사유로 ① 개량 성과의 **무상·일방적 귀속**, ② 라이선시가 자신이 개량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③ 상호주의 없는 배타적 역실시허락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원의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제 14 조 제 2 항은 개량 성과의 일방적 귀속을 규정하는 등 행위가 무역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칠 경우, 중국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재를 받을 리스크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유효성의 경계선

실무상 개량기술 귀속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상호 이익"의 실질적 확보 여부입니다.

유형	유효성 평가	비고
라이선시 개량기술을 **무상으로** 라이선서에 단독 귀속	**무효 가능성 높음**	전형적 무효 사례
라이선시 개량기술에 대해 라이선서에게만 **무상 독점** 실시권 부여 + 라이선시 자신은 사용 불가	**무효 가능성 높음**	기술 발전의 부당한 제한
라이선시 개량기술을 라이선서에게 **무상 비독점** 실시권 부여 (라이선시도 자유롭	상호주의·비례성에 따라 판단. 라이선서의 원천기술도 상응하여 제공되는 경우	협상 포인트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유형	유효성 평가	비고
게 사용)	유효 가능	
상호 cross-license (쌍방 개량기술을 서로 비독점·무상으로 실시)	**유효 가능성 높음**	권장 구조
라이선서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고 개량기술을 양수 또는 독점 실시	**유효**	대가의 합리성이 관건
라이선시에게 개량기술 **통지 의무** 부과	**유효**	소유권 귀속과 별개

③ 실무 권고 — 이렇게 설계하십시오

한국 본사 입장에서 개량기술의 활용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무효 리스크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권장됩니다.

1. **개량기술의 정의를 세분화**: "라이선스 기술에 직접 기반하여 그 기능·구조의 일부를 변경한 사소한 개량(minor improvement)"과 "라이선스 기술과 독립하여 실질적 신규성·진보성을 갖춘 독립 발명(independent invention)"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후자까지 라이선서에 귀속시키는 조항은 무효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2. **상호주의 확보**: 라이선서의 개량기술도 라이선시에게 비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쌍방 구조로 설계합니다. 이는 유효성 담보는 물론, 라이선시의 수용성을 높이는 실무적 효과도 있습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3. **소유권은 개량자에게, 라이선서에게는 실시권**: 개량기술의 소유권은 라이선시에 귀속시키되, 라이선서에게 **전 세계 비독점·무상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통상 가장 안전합니다. 독점 실시권이나 양수를 원한다면 합리적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4. **통지 및 공동출원 절차**: 개량기술 발생 시 일정 기한 내 서면 통지 의무, 특허 출원 시 공동 출원 또는 우선협상권(first negotiation right)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5. **지역·기간 제한의 합리성 확보**: 라이선서에게 부여되는 실시권의 지역·기간 범위가 원 라이선스의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유효성 확보 차원을 넘어, 중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계약 전체의 공정성을 판단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제 3 편 예고**

- 침해 발생 시 활용 가능한 4 대 구제 경로 — 민사·행정·형사·세관
- 행정단속과 민사소송을 결합한 이원적(双轨制) 대응 전략
- 증거 보전의 실무 포인트 — 공증원 동행, 전자증거 고정
- 전체 시리즈 결론 및 지평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관련 업무 사례]**

- 반도체 설비 제조 기업 F 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체결 자문

- 바이오 기업 B 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문
- 러시아 대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 전략 자문
- 웹툰 작가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과의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자문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외부 기고 ▐

01. 중국 상표법상 거절 사유에 대한 고찰 (법률신문 2026. 5. 6)

(박현지 변호사) 중국 상표 등록 제도 하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 형식적,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사하여 판단하고, 심사 기준 및 판단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표 출원이 거절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에서 등록을 마친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표 출원에 실패하는 사례는 중국 진출 실무상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상표 출원 결과가 현저히 달라지는 이유는 중국 상표법의 구조적 특성, 심사 기준과 관행, 법적 조항에 따른 효과의 차이 등을 포함한 고유한 법제에서 비롯된다.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01

02.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노동계약 체결 실무 (월간노동법률 2026. 5. 7)

(손덕중 변호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인사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노동계약 체결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성문법 체계를 취하고 있고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도 유사하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 보면 계약 체결의 시기, 형식, 효과 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특히 중국 '노동계약법'은 서면 계약 체결을 게을리한 사용자에게 매우 무거운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간과한 한국기업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쟁점을 정리한다.

링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7&in_cate2=0&gopage=1&bi_pidx=39127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최신 법령/판례 ▐

01. 「미국이 중국 기업 5 개사에 대해 이란산 석유 관련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한 차단명령 공포」(公布关于美国对 5 家中国企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的阻断禁令)

2026 년 5 월 2 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차단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에 근거한 최초의 차단금지령(阻断禁令, 상무부 공고 2026 년 제 21 호)을 발동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산 석유 거래를 이유로 헝리석화(恒力石化) 등 중국 석유화학기업 5 개사를 SDN 리스트에 포함시킨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 상무부는 해당 5 개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를 인정·집행 또는 준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차단 법률 메커니즘을 최초로 공식 가동한 사례로서, 중국의 대외 반제재 체계가 단순한 '서면상의 규정'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적 집행'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02. 「EU 외국보조금 조사 관련 조치가 부당한 역외관할에 해당함에 관한 공고」(关于欧盟外国补贴调查相关做法构成不当域外管辖的公告)

2026 년 5 월 15 일 공포·시행된 「EU 외국보조금 조사 관련 조치가 부당한 역외관할에 해당함에 관한 공고」(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공고 제 5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즉,「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부당한 역외관할 대응 조례」제 3 조 및 제 6 조 등에 따라, 사법부가 상무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조사·판단한 결과, 유럽연합(EU)이「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을 근거로 동방웨이스(同方威视) 조사 과정에서 중국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관련 역외 조사 방식이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해당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조·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3.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纠纷案件适用惩罚性赔偿的解释)

202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의" 및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기초금액 계산 방식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배수 결정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본「해석」은 피고의 위법소득 또는 침해수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기초로 하는 경우, 영업이익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업(業)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익률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기관·업계협회 등이 공표한 동기간 동일 업종의 평균 이익률 또는 권리자의 이익률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손해배상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법무법인[유] 지평

상해 사무소